

상 조 회 칙

제정 1987. 10. 16	개정 1997. 4. 16	개정 2010. 4. 1
개정 1990. 3. 1	개정 2001. 6. 1	개정 2010. 4. 30
개정 1992. 3. 1	개정 2002. 4. 1	개정 2011. 4. 1
개정 1992. 5. 18	개정 2002. 7. 29	개정 2012. 11. 7
개정 1993. 4. 1	개정 2003. 4. 1	개정 2015. 4. 1
개정 1993. 12. 16	개정 2004. 5. 1	개정 2019. 6. 1
개정 1994. 5. 1	개정 2007. 4. 1	개정 2019. 8. 27
개정 1995. 4. 1	개정 2008. 4. 1	개정 2019. 11. 1
		개정 2020. 4. 1

제 1 장 총 칙

제 1조(명칭) 본 회는 포항공과대학교 상조회(이하 "본 회"라 한다)라 한다.

제 2조(목적) 본 회는 교직원의 상호부조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(사업) 본 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원금의 지급.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은 제 5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2. 삭제
3. 기타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사업

제 4조(구성 및 업무처리 기준) 본 회에는 회장, 간사, 대의원회 및 감사를 둔다.

본 회의 사업 및 본 회와 관련된 업무는 본 회칙에 근거하여 회장이 집행하며, 세부적인 업무는 회장의 위임을 받아 간사가 수행한다.

제 2 장 회 원

제 5조(자격) ① 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하고 그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퇴직일 또는 탈퇴일까지로 한다.

1. 포항공과대학교의 전임교원(방문교수, 대우교수, 박사연구원, 조교 제외)
2. 대학 및 법인 정규직원(촉탁직 포함)

3. 상근계약직원

4. 가속기연구소 전임직원

② 삭제(2020.4.1)

③ 위의 자격자는 임용일로부터 15일이내에 (별표2)의 교직원상조회 가입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6 조(자격정지) ① 3개월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되며,기 납입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②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재가입할 수 없다.

제 3 장 회 의 운 영

제 7조(회의 운영기관)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 및 대의원회를 둔다.

① (임원) 본 회의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.

1. 회장은 당연직으로서 행정처장이 겸임한다.

2. 감사는 교원 1인, 직원 1인으로서 회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.

② (대의원회) 대의원회는 다음 1호의 구성으로 하며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.

1. 교원 3인, 직원 4인(대학 3인, 가속기 1인)으로 하는 대의원

③ 대의원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④ 보선에 의하여 임명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⑤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.

제 8조(대의원회 기능 및 선출)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.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

2. 회칙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3. 회비의 조정

4.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추천을 받은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
1. 교무처장이 추천하는 전임교원

2. 행정처장이 추천하는 대학 직원

3. 가속기연구소장이 추천하는 가속기연구소 직원/연구원

③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한다.

④ (삭제) 2019.08.20

⑤ 감사는 회의 운영과 업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 하여야

하며,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
제 9조(대의원회의 소집과 정족수) ① 대의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매 회계연도 초에 회장이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대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에 의해 또는 회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소집권자의 동의에 의해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.

③ 대의원회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제 4 장 기금조성 및 관리

제 10조(기금조성) 본 회의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조성한다.

1. 회원의 회비
2. 회원의 기부금
3. 수익사업의 이익금
4. 기타 수익금

제 11조(회비) ① 회원은 매월 20,000원을 회비로 납부한다.

② 신규가입 회원은 가입당시의 급여액(1개월분)을 기준으로 3개월분에 해당하
는 회비를 입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(삭제) 2002. 7. 29

제 12조(기금관리) 본 회의 기금은 금융기관의 예금형태로 관리하며, 간사는 현금시제를 운영할 수 없다.

제 5 장 지원금

제 13조(지급금액) 지원금의 종류와 지급금액은 (별표 1)과 같다. 후단 삭제

제 14조(신청 및 지급) ① 지원금 수급대상 회원은 POVIS시스템(Human Resource-경조금신청)으로 신청하며, 이 경우 회장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 지원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제 6 장 대 부 (삭제)

- 제 15조 (삭제)
- 제 16조 (삭제)
- 제 17조 (삭제)
- 제 18조 (삭제)

제 7 장 예 산 및 결 산

제 19조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포항공과대학교의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한다.

제 20조(예 산) 본회 예산서는 각 회계연도 개시전 1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의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. 다만, 실무목적상 직전연도 결산서와 함께 보고, 승인할 수 있다.

제 21조(결 산) ① 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의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감사는 결산서를 감사하고 대의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 8 장 회 칙 개 정

제 22조(발의) 회칙개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의한다.

1.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
2. 회원 4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

제 23조(의결) ① 회칙개정의 정족수는 제9조 제3항과 같다.

② 회장은 회칙개정을 공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1994년 5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1995년 4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회칙은 1997년 4월 16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배우자 회갑 경조금은 1997년 3월 1일부터 호적등본에 의거 소급 적용한다.

부 칙

1. 시행일 : 이 회칙은 2001년 6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
 - 가. 이 회칙 중 제 6장 대부조항(제15조, 16조, 17조, 18조)에 대해서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.
 - 나. 이 회칙의 개정으로 상조회 대부 시행지침은 개정일부로 폐지한다. 단, 폐지일 이전 기존 적용자는 상환이 완료 될 때까지 종전의 시행지침에 따른다.

부 칙

1. 이 회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회칙중 제3조(사업), 제11조(회비)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, 제5조(자격) 제2항의 "법인으로 전보된 대학직원 중 본인 희망자"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, 연봉계약직원 2000년 4월 1일부 가입, 제8조(대의원회 기능)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02년 7월 29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04년 5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회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조금지급 기준) 배우자회갑 축의금은 회원 본인회갑 축의금과 통합 지급한다.

부 칙

1. 이 회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삭제) 2019.08.27 단, 현 상조회원인 연봉 계약직원은 회원 자격 유지
3. 경조사 동일건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.

부 칙

1. 이 회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이 회칙 중 제 2장 회원조항(제5조 1항의 3호, 4호, 5호)에 대해서는 가입여부는 본인이 결정하고 가입일 이전 경조금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.
3. 이 회칙 중 제 3장 회의운영조항(제7조 2항의 2호)에 대해서는 차기대의원을 선출 (2011년 4월)할 때 시행 한다.

부 칙

이 회칙은 2010년 4월 30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회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퇴직자 요청시 본인부담으로 조문용품(약30만원상당)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1. 이 회칙은 2012년 11월 7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이 회칙 중 제 2장 회원조항(제5조 3항)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자는 동의로 간주하고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이 회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비상조교직원(퇴직교직원 포함)이 조문용품을 요청시 본인부담(250,000원)으로 조문용품만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상조회 수입으로 상조회 운영통장으로 입금한다.

부 칙

개정 회칙은 2019.6.1부로 시행한다.

부 칙

개정 회칙은 2019.8.27부로 시행한다.

부 칙

개정 회칙은 2019.11.1부로 시행한다.

부 칙

개정 회칙은 2020.4.1부로 시행한다. 다만, 제 13조 후단 삭제는 2019.8.27부터 적용한다.

지원금 지급기준

(별표 1)

(단위:원)

구 분	종 별	지급금액	주문용품	기관경조금(조화)	비 고
축 의 금	본인결혼	600,000	-	200,000	■ 경조사 동일건 1회 지급, ■ 본인회갑시 배우자회갑과 통합지급(1,300,000원) (2007.04.01) ■ 주민등록등재 자녀 장례용품 지원(05.4월부) ■ 비상조교직원(퇴직교직원 포함)이 주문용품을 요청시 본인부담 (250,000원)으로 주문용품만 지원 하고 본인 부담금은 상조회 수입 으로 상조회 운영통장으로 입금함 ■ 주문용품은 지역별 배송시간을 고려하여 배송이 5시간 이상 소요 되거나 불가능한 지역은 현금과 용품중 선택할 수 있다.
	자녀결혼	500,000		100,000	
	부모회갑	500,000		100,000	
	배우자부모회갑	500,000		100,000	
	본인회갑	1,300,000		0	
	배우자회갑				
조 의 금	본인사망	10,000,000	1 세트	2,000,000 (100,000)	
	배우자사망	4,500,000		300,000 (100,000)	
	자녀사망	1,500,000		300,000	
	부모사망	900,000		300,000 (100,000)	
	배우자부모사망	900,000		300,000 (100,000)	
	본인조부모사망	500,000		150,000	
	배우자조부모사망 (19.6.1부)	500,000		150,000	
	친형제자매	100,000		100,000	
전 별 금	3-5년 재직회원	150,000			본인 사망시 전별금 미지급 재직기간은 회원가입일 기준
	6-8년 재직회원	300,000			
	9-11년 재직회원	600,000			
	12-14년 재직회원	900,000			
	15-17년 재직회원	1,200,000			
	18-21년 재직회원	1,500,000			
	22-37년 재직회원	1년 경과시마다 5만원추가 (최대 2,300,000)			
기 타	장례보조비 (본인사망)	1,500,000			상조회에서 현금지급 또는 장례비용으로 집행
	본인 질병치료 위로금	1,000,000 이내			개별건에 대해 대의원회의에서 지급여부/금액 정함

